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공급에 관한 일반조건

본 일반조건은 기업인, 공공법률기관(public law institutions) 및 공공법률특별기금(public law special funds)(이하 “고객”이라 한다)과의 법적 거래에 적용된다.

1. 총칙

- 1.1 당사의 납품은 전적으로 본 문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고객 측의 일반적 약관은 당사가 명시적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 한(당사가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일반조건에서 “고객”이란 본 계약에 국한된 계약 당사자 법인을 의미한다.
- 1.2 계약 체결 이전 혹은 그 시점에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는 서면을 통해 당사의 확인을 득해야 유효하다. 계약 변경은 서면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양식 요건 변경 시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자서명(예. DocuSign)으로 전달되더라도 서면 양식 요건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 1.3 당사의 견적을 수령한 지 2주 이내에 고객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견적을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 1.4 원가 추산치는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있다.
- 1.5 당사의 납품은 작업명세서(Statement of Work), 제품 사용설명서(www.etas.com/manuals), 제품 또는 서비스 설명에 정의된 바 합의된 용도에 대해 유효하며 기업 간(B2B) 거래에 국한된다.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예. 작업명세서), 당사의 납품은 ETAS 가 ETAS 상품을 공급하는 대상시장에 대해 유효하다.
- 1.6 신규 공급 약관이 발효될 때까지, 본 일반조건은 고객에 대한 모든 향후 납품에도 적용된다.

2. 고객의 협력의무

- 2.1 고객은 당사의 납품 및/또는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당사에 전적으로 알릴 의무를 지닌다. 당사는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 정보 혹은 기타 업무수행에 대해 그

완전성 및 정확성을 검증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단, 당사자 간의 계약상 의무로 이러한 검증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나 문서에 결함, 불완전성, 모호함이 존재하거나 객관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사의 통지 즉시 고객은 필요한 수정 및/또는 변경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고객은 당사가 통지한 바 고객이 납품한 부품의 결함 혹은 오작동에 대해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2 고객의 구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 한,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작업용 자재 및 도구 등의 작업 인프라는 당사의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안의 속성 상 혹은 고객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다른 약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고객은 안전 유지를 위한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납품 및/혹은 서비스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 2.3 고객은 계약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 및 수령하고 납품된 소프트웨어 수령 및 당사에 불만사항 혹은 결함을 보고할 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2.4 고객은 당사 제품을 정확하게 통합할 책임이 있으며 생산적 사용에 앞서 제품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 2.5 또한, 고객은 당사 제품의 사용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반드시 검증하고, 정확한 기능성(예. 기능 안정성에 관한) 검증을 위해 이를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

3. 가격 및 지불조건

- 3.1 송장은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정가에 법정 부가가치세(VAT)를 가산하여 발행한다. 단, 고객이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수출 인도 면세를 위한 사전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청구되지 않는다. EU 면세지역 내 납품의 경우, 고객은 10일 이내에 배송이 인계된 국가의 법규에 따라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증거를 ETAS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증거가 기한 내에 가용하지 않을 경우, ETAS는 해당 국가의 법정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3.2 디지털 공급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라이선스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라이선서의 청구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이선스는 부가가치세(반대요금)를 부담한다". 현지 부가가치세 및/또는 기타 현지 세금이 라이선스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경우 라이선스가 이러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3.3 라이선스/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고객의 소재지 국가의 현지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 고객은 해당 세금을 미지급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송금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소재하는 국가와 ETAS 가 소재하는 국가간의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감면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감면신청이 확립된 규칙에 따라 처리됨을 확인한다. 고객은 ETAS 에 원천징수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증명서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 3.4 계약체결 후 인도시점까지 4 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 한해, 특히 임금인상(예. 단체교섭 계약으로 인해) 혹은 자재가격 변동에서 기인한 가격인상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당사의 가격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변경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이를 고객에 제공해야 한다.
- 3.5 보증 대상이 아닌 예비부품 배송 및 불량품 반송 시 당사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외에 합리적 수준의 정액 운송료 및 포장 수수료를 부과한다.
- 3.6 달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송장은 발행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대금지급은 공제 없이 송장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당사는 법정 금리 하에 연체이자를 부과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당사의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7 당사는 동시지급(예. 인도 시 현금으로 지불 혹은 자동이체) 혹은 선불 조건으로 납품할 권리를 지닌다.

- 3.8 또한, 당사는 가장 오래된 미수금액과 상계할 권리를 갖는다.
- 3.9 고객은 자신의 반대청구가 다통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구속력 있는 최종 판결에 의해 인정되거나, 계류 중인 소송에서 판정 단계에 있는 경우에 한해,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반대청구로 상계할 권리가 있다.
- 3.10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지불능력 미흡으로 인해 당사가 청구 관련 위험에 직면할 만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선불 조건 혹은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해 잔여 배송을 이행하고, 이를 위해 설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 혹은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4.1 소프트웨어 배분은 제한된 혹은 무제한 기간 동안의 라이선스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두 경우에서 모두, 고객에게는 계약에 명시된 라이선스 모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비독점적) 권리가 부여된다. 제 3 자(계열사 포함)의 이용 시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하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임시 라이선스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1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후 자동으로 종료된다. 하기 명시된 라이선스 서버 외의 서버 인프라 혹은 클라우드 상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 4.2 라이선스 모델
 - (1) **워크스테이션 라이선스(MACHINE-BASED LICENSE)**는 고유하게 식별된 1 개의 물리적 로컬 머신("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고객에 부여한다. 각 라이선스는 명시된 워크스테이션 또는 해당 워크스테이션 상의 1 개 가상 시스템에서 특정 시점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설명서나 사용자 매뉴얼에서 달리 설명되지 않는 한,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예. Microsoft Remote Desktop 또는 서버)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 (2) **중앙에서 관리되는 단일 개인 사용자 라이선스(USER-NAMED LICENSE)**는 고유하게 식별된 1 명의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고객에 부여한다. 각

라이선스는 최대 3 개의 워크스테이션 혹은 해당 워크스테이션 상의 가상머신에서 특정 시점에 한 번만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라이선스는 고객이 할당/제어하는 라이선스 관리 서버(이하 "라이선스 서버")를 통해 획득된다.

- (3) **동시 라이선스(FLOATING LICENSE)**는 고객이 할당/제어하는 라이선스 서버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1 개의 워크스테이션 혹은 해당 워크스테이션 상의 가상머신에서 특정 시점에 한 번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고객에 부여한다.
- (4) **기업용 라이선스**는 고객사가 원하는 수의 직원들이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본 라이선스 모델에서는 제 3 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 혹은 제 3 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용(예. 서브 라이선스에 의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볼륨 라이선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이 제품, 프로젝트 혹은 플랫폼 당 및/혹은 특정 기간 동안 계약 상 합의된 양의 복제에 국한된다. 제품, 프로젝트 혹은 플랫폼은 모호하지 않은 지정, 사용된 프로세서/컴파일러 유형 및 제작연도를 통해 식별되어야 한다.
- (6) **제품 및/혹은 프로젝트 및/혹은 플랫폼 라이선스**에서는 계약상 합의된 복제의 양에 대한 제한 없이 고객의 특정 제품, 프로젝트 또는 플랫폼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품, 프로젝트 또는 플랫폼은 명확한 지정, 사용된 프로세서/컴파일러 형식, 개발 라이선스의 경우 개발연도, 제조 라이선스의 경우 제조연도를 통해 식별되어야 한다.
- (7) 라이선스 모델의 조합이 가능하다.

4.3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는 바이너리 코드로 제공된다.

4.4 제 4.2 조 제(1)항-(3)항에 기술된 라이선스 모델과 연계하여 고객은 ETAS 로부터 취득한 라이선스 키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해야 한다. 제 4.2 조 제(1)항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관리를 위해, 고객은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고유의 익명화된 식별정보를 당사에 추가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제 4.2 조 제(2)항에 기술된 중앙에서 관리되는 단일 개인 사용자 라이선스의 경우 고객은 사용자에 대한 고유의 식별정보를 당사에 전달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기술된 라이선스의 경우, 고객은 라이선스 서버에 ETAS 가 제공하는 라이선스 확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라이선스 서버에 대해서도 고객은 고유의 익명화된 식별정보를 당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4.5 소프트웨어 사본은 허가된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 및 설치할 수 있다(백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백업본 생성 포함).

4.6 저작권법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당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을 수정, 복사/복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번역 또는 단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7 고객은 데이터 매체에서 문자 숫자식 혹은 기타 식별정보를 제거할 수 없으며, 수정 없이 백업 복사본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4.8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개작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4.9 ETAS 소프트웨어는 타 프로세스와 프로그래밍 언어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는 제 3 자 벤더의 프레임워크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고객은 이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인터페이스 상에서 제품 확장(일명 추가 기능(Add-Ons)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4.10 본 계약 제 4.2 조에 기술된 라이선스 모델은 고객이 지체 없이 해당 거래를 통보하는 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연구 라이선스를 제 3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고객은 제 3 자에 대한 라이선스 양도가 일체의 다중 사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보유 중인 모든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책임이 있으며, 고객은 이러한 삭제결과를 ETAS 에 서면으로 확정해야 한다. 고객은 제 3 자가 본 일반조건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납품조건을 수락하였음을 명시한 서면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 고객이 보유하여야 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양수인에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제공한다.

4.11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고객은 당사의 소프트웨어 또는 그 기능을 인터넷과 같은 통신 시스템(예: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 3 자(예: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4.12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장비와 함께 취득한 경우, 고객은 제 3 자의 사용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해당 장비와 함께 양도한다.

4.13 라이선스에 대한 라이선스 서버 호스트 ID 혹은 MAC 주소는 다음과 같이 신규로 지정할 수 있다(예. 컴퓨터 교체 시("Rehost")): MACHINE-BASED LICENSE 의 경우 6 개월에 한번, USER-NAMED LICENSE 의 경우 12 개월에 한번, FLOATING-LICENSE 의 경우 6 개월에 한번. 고객은 신규 라이선스 수령 시 기존의 라이선스 및 일체의 모든 사본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고객은 ETAS 의 요청 시 이러한 삭제결과를 ETAS 에 서면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라이선스는 삭제되어야 한다. 리호스트 주파수가 잘못 사용되거나 최초 라이선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사는 그로 인해 초래된 손해를 고객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예. 라이선스 손실 및 유지보수 수수료). 워크스테이션 또는 라이선스 서버를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변경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고객에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다.

4.14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 제공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당사는 유효한 서비스 계약이 존재하는 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 신규 배포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한다

4.15 시뮬레이션 모델 라이선싱의 경우 추가적 및/또는 다소 상이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4.16 보증 및/혹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신규 소프트웨어 버전이 고객에 제공되는 경우, 해당

버전에는 상기 언급한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된다. 신규 버전 설치 시, 이전 버전에 대한 고객의 사용 권리는 소멸된다.

4.17 타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일부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와 함께 추가기능(Add-Ons)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 ETAS 는 테스트 및 평가 목적으로 이러한 추가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비 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한시적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추가기능의 사용권은 설치일로부터 14 일(이하 "유예 모드(Grace Mode)")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고객은 시리즈 개발/제작에 해당 추가기능을 사용 및/혹은 이를 제 3 자에 제공(서브 라이선스 허여 포함)할 권리는 갖지 아니한다. 제 4.4 조 내지 -제 4.7 조가 각기 적용된다.

4.18 본 약관 외에도 ETAS 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추가적 제품 견적 및 판매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는 다음 링크 www.etas.com/AGB-ETASGmbH 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혹은 요청 시 제공된다.

5.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5.1 개별 라이선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별도로 체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객은 본 조항에 기술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계약은 항상 라이선스계약의 개시 시점부터 시작된다. 본 조항에 기술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는 라이선스 허여된 소프트웨어의 최신 프로그램 버전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이전 프로그램 버전에 대한 모든 지원 서비스는 당사자들 간 별도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5.2 달리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다음의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 결함 수정, 기능 향상 및/또는 기술 프레임워크 수정 등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신규 프로그램 버전 제공.

- 심각한 오류를 해결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패치 및 수정사항 제공
 - 제한, 오류 수정 및/또는 오류 회피에 대한 정보 제공
 - ETAS 의 정규 업무시간(월-금요일, 공휴일은 제외) 동안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 관련 질문) 및/또는 결함 관련 일상적 혹은 간단한 이슈에 관한 기술지원
- 5.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다음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프트웨어 통합 및 그러한 통합이 타사 제품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
 -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 합의된/지정된 운영환경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 ETAS 가 납품하지 않은 제품에 의해 발생한 문제 및 오류
- 5.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제공에 관한 합의는 시스템 가용성 및/또는 자기보정(fail-safe) 기능 안정성에 대한 ETAS 의 확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5.5 합의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는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고객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5.6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제공된다.
- 5.7 고객의 협력 의무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에도 적용되며, 특히 고객은 당사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로 달성한 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책임을 진다.
- 5.8 고객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코드,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데이터 등의 추가 정보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5.9 ETAS 가 BDSG 제 62 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 28 조에 따라 프로세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약관(ETAS GmbH)에 의거한 개별 주문, 유지보수계약 혹은 보증에 따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하드웨어 수리 및 교정 서비스 데이터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www.etas.com/AGB-ETASGmbH 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고객의 요청 시 제공됨)이 적용된다.

6. 컴플라이언스 검증

- 6.1 당사는 고객이 설치하여/혹은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 및 환경에서 계약상 승인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및 합의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는 관련업체 및/혹은 독립 감사인에게 이러한 검증작업을 위임할 권리를 가진다. 단, 해당 업체들은 서면 기밀유지계약에 기초하여 기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6.2 고객은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계약상 합의된 바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감사가능한 증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기록, 시스템 출력물 및 기타 시스템 데이터를 작성 및 보관하여 당사 혹은 당사의 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검증결과 불일치 사항 및/또는 고객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고객에 이를 통지한다.

7. 납품, 납품기한, 지연

- 7.1 합의된 납품일의 개시 및 준수는 특히 장비 공급, 문서, 허가, 조사, 배포 및 합의된 지불조건 준수에 대한 고객의 협력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객이 협조의무를 적시에 또는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납품기한은 이에 따라 적절히 연장되어야 한다.
- 7.2 납기일 미준수가 전쟁 혹은 이와 유사한 분쟁, 테러공격, 전염병, 수출입 제한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 및 기타 소요사태에서 초래된 경우(공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속성의 사건 포함) 합의된 납품일자는 해당 사태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이는 당사 혹은 당사의 공급업체 관련 노사분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7.3 납기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배상청구는 제 11 조에 따른다.

7.4 고객이 배송 혹은 납품 지연을 초래하거나(default of acceptance) 협력의무를 책임감 있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당사는 해당 월별 제품 혹은 서비스 가격의 0.5%에 해당하는 추가적 지출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그 금액은 해당 제품 혹은 서비스 가격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는 더 크거나 적은 금액의 손실 또는 손해를 증빙할 자료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고객에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일부 배송 및 해당 송장들은 허용될 수 있다.

8. 불만사항 및 결함 신고

- 8.1 제품 수령 후 15 일 이내에 인식가능한 품질 결함이 있는 경우 고객은 이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탁송화물에 동봉된 접착식 박스 라벨, 내용물 라벨 및 일체의 집계 시트 혹은 관리용 전표는 통지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품질 결함 관련 기타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고객은 마찬가지로 발견 즉시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통지서의 기준일은 당사가 해당 결함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로 한다.
- 8.2 불만사항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8.3 상기 명시된 기간 내에 당사가 결함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품질결함 클레임은 예외로 한다.
- 8.4 운송손실에 대한 청구는 관련 법률 및 계약상 제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8.5 고객은 사소한 결함으로 인도 수락을 거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9. 품질 결함

- 9.1 품질결함에 따른 클레임 제한기간은 제품 인도 후 24 개월로 한다(위험이전). 전술한 조항은 한국 법령 상 보다 긴 제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9.2 위험 이전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로 인해 제한기간 내 품질결함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재량에 따라 결함을

수리하거나 결함 없는 제품을 납품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보증 클레임은 재현가능한 오류와 고객이 수용 혹은 채택한 최신 버전에서 발생한 오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 9.3 결함을 수리함으로써 후속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는 재량에 따라 고객 시설 혹은 자체 시설에서 해당 결함을 교정하며, 고객은 결함 해결에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결함이 없는 제품의 배송을 통해 결함이 시정되는 경우, 당사는 신규 개정된 레벨 혹은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권리가 있다.
- 9.4 후속조치를 통해 제한기간이 새롭게 시작되지는 않는다.
- 9.5 후속조치가 실패한 경우, 고객은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법적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 혹은 보상을 축소할 수 있다.
- 9.6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출, 특히 운송, 출장, 임금 및 자재비용에 대한 고객의 청구는 법적 규정에 준한다. 단, 납품된 제품이 추후 고객 영업점 이외의 장소로 이전됨으로 인해 비용이 인상된 경우, 지정된 제품사용에 따른 철거가 아닌 이상, 예외로 한다.
- 9.7 후속조치에 대한 청구는 합의된 품질을 기준으로 근소한 수준의 차질 혹은 사용가능성 상의 근소한 차질일 경우 제외하며, 이는 권리와 청구 상에 더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9.8 다음 사항은 품질에 관한 결함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자연적인 마모
 - 부적절한 취급, 작동, 보관 또는 조립, 설치 또는 취급지침 불이행, 과도한 변형 또는 사용으로 인해 위험이전 후 발생한 제품의 특성 혹은 손상.
 - 불가항력, 계약조건 상 예기치 못한 특수한 외부요인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혹은 정상적 사용방식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특성 혹은 손상.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재현 불가능한 오류

9.9 고객 또는 제 3 자가 지정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장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당사는 인터페이스까지의 품질결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고객의 데이터 처리 환경, 특히 고객이 구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9.10 고객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결함으로 인한 손상의 결과를 방지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고객은 모든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백업이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9.11 고객이 디자인이나 재료를 규정하는 한, 당사는 재료의 설계나 선택에 따른 제품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12 고객의 청구권은 해당 청구가 자신의 고객과 사이에 존재하는 하자 관련 법정채권(예. 사례금 또는 영업권)을 초과하는 일체의 계약에 기초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9.13 고객의 청구권 주장을 포함하여 품질 결함에 대한 클레임은 고객이 당사 수리부서에 의해 결함 수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9.14 기타 모든 측면에서 품질 결함을 이유로 민법 제 393 조 에 따른 기술된 손해 및/또는 과도한 지출에 대한 당사의 보상책임은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및 제 11 조 이외의 품질결함에 대한 고객의 청구는 제외한다.

9.15 제 3 자의 재산권 침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소유권 상의 결함은 제 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저작권 및 관련 보호권

10.1 당사는 제 3 자의 산업재산권 혹은 저작권(이하 "보호권") 침해에서 발생한 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이는 지분 혹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이 과거 혹은 현재 소유한 보호권인 경우에 한한다.

10.2 보호권 군에 속한 최소 1 개의 보호권이 유럽 특허청(EPO) 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또는 미국 중 1 개 국가에 의해 공표된 경우가 아니 한, 당사는 보호권 침해에서 기인한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3 고객은 보호권 침해(주장) 및 이와 관련한 보호권 침해 위험이 파악된 경우 당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당사의 요청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사법적 절차 포함) 진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4 보호권을 침해한 제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재량에 따라 더 이상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권을 획득 혹은 제품을 개조하거나 더 이상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동등한 대체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 조건 혹은 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법적 해지 권한을 갖는다. 전술한 전제조건에 따라 당사 역시 해지 권한을 보유하며, 이에 제 1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호권 침해가 아직 최종적이고 유효한 판단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당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더라도 당사는 본 조항 제 1 문에 따라 임의로 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10.5 보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 있거나 제 3 자가 제기한 청구과 관련하여 고객이 당사의 방어를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청구는 제외된다.

10.6 제품이 고객의 사양이나 지시에 따라 제조된 경우, 또는 보호권 침해(주장)가 당사 제품을 타사 제품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혹은 당사가 예기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품이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경우 고객의 청구는 제외된다.

10.7 그 외의 모든 측면에서, 보호권 침해 시 당사의 손해배상 의무는 제 11 조에 따른다.

10.8 보호권 침해에 따른 청구권의 제한기간은 제 9.1 조를 준용한다.

10.9 본 제 10 조 및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제 3 자 보호권 침해에 대해 고객이 제기한 것 외의 청구는 제외한다.

10.10 제품은 표준(예. 모바일 서비스 표준, WLAN 표준), 통합 전자제품 및/또는 하위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컴포넌트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품과 관련하여 이러한 제 3자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와 해당 제 3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고객 대상 클레임에 대한 배상은 ETAS 산출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객은 이러한 제 3자 지식재산권의 소유주로부터 직접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표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 사양 혹은 기능을 의미한다: (i) 표준조직(특히 ETSI 혹은 IEEE)이 채택, (ii) 연구기관, 산업체 혹은 기타 시장참여자가 기술적 정합성 혹은 호환성을 기하기 위해 정의, 혹은 (iii) 특정 기술분야에서 공통된 관행으로 제정.

10.11 고객이 제품에 포함된 표준, 통합 전자제품 및/또는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제 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ETAS는 요청 시 그러한 주장에 관한 정보들을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ETAS가 통제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권리를 지닌 일체의 문서를 포함한다.

11. 손해배상, 제조물책임

11.1 당사는 계약상 혹은 비 계약상 의무 위반의 결과로 초래된 손해 및 과도한 지출에 대해 보상(이하 "보상") 책임이 있다. 단, 이는 다음의 경우에 국한된다.

- 고의적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
- 치명적이거나 신체적인 상해 또는 건강 상의 손상
- 품질 또는 내구성에 관한 보증
- 중요한 계약의무 위반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의무적 책임 혹은
- 기타 의무적 책임

11.2 그러나 중요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지급되는 보상은 계약형태에 따라 전형적으로 예측가능한 손상에 한정된다. 단, 고의적 행위나 중과실 또는 치명적 혹은 신체적 상해 또는 건강상의 손상이나 품질보증 인수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3 당사의 제품은 전자시스템에 대한 통제 혹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생명 혹은 사지의 부상이나 재산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오로지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만이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부적절한 작동 또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의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 당사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1.4 차량 거동에 대한 안전 관련 개입을 위해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예. 차량의 버스시스템 촉진(예. CAN) 혹은 차량의 제어장비에 우회 개입하는 경우(예. 파워트레인, 새시 또는 차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량 탑재 전자 제어장치) 및 오작동 시 생명의 위협 및 사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전자제어기기와 당사 제품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 사용자는 위험 발생 시 안전조건(예. 비상정지모드 또는 Limp-Home 작동)으로 시스템을 안전하게 전환하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11.5 고객의 자체 소프트웨어 또는 모델 혹은 하드웨어 세그먼트의 사용 또는 인터페이스를 통한 당사 제품 액세스에서 기인한 성능, 사용성 및 안전성 상의 여파 혹은 손상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6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결함 또는 오류가 고객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에 손실 또는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에는 복구에서 기인한 일체의 지출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객은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11.7 전술한 조항은 증거 번복(reversal of evidence)으로 해석될 수 없다.

11.8 당사에 대한 책임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한, 그러한 배제 또는 제한은 당사의 직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위하여도 적용된다.

12. 소유권 유지

12.1 당사는 현재와 미래의 사업관계에 기초한 당사의 채권이 전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납품된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12.2 소유권 보유 제품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지보수는 고객의 비용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12.3 고객은 정상적 영업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을 가공 혹은 연결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는 제 12.1 조에 명시된 당사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그러한 가공 혹은 연결로 창출된 제품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시점에 이미 고객은 공동소유권을 당사에 양도하게 된다. 계약상 부차적 의무로서, 고객은 당사가 공동소유권을 보유한 품목들을 무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당사의 공동소유지분 비율은 당사 제품의 가치와 그 가공 혹은 연결 당시 이를 통해 창출된 품목의 가치(부가가치세 포함 송장 금액)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12.4 고객은 통상적 영업 과정 내에서 제품을 선불 또는 소유권 보유 조건으로 재판매할 권리를 가진다. 이 시점에 이미 고객은 당사 제품이 추가적으로 가공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의 제품 판매에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 및 모든 부수적 권리를 당사에 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양도된 청구권은 제 12.1 조에 따라 당사의 청구에 대한 담보의 기능을 한다. 고객은 양도된 청구권을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당사는 고객이 당사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히 고객이 지급을 연체 혹은 중지하였거나 파산 또는 채무면제 목적의 유사한 절차를 신청한 경우 제 12.4 조에 명시된 고객의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당사는 고객의 재무적 상황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고객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제 12.4 조에 명시된 고객의 권리를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12.5 요청 시, 고객은 당사가 소유권 혹은 공동소유권을 보유한 제품이 누구에게 판매되었는지 및 이러한 판매를 통해 발생한 고객의 채권에 대해 당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객은 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공인된 증서를 당사에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12.6 고객은 당사가 소유권 혹은 공동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 혹은 당사에 양도된 채권에 대해 여하한 처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당사 소유의 제품에 대한 권리 혹은 채권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해 압류 혹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고객은 당사 소유 혹은 담보의 재산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을 취소하고 제 3 자로부터 재산품목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품목을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2.7 당사가 보유한 담보의 가치가 당사의 채권 총액을 10% 이상 상회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요청 시 그 한도까지 재량으로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13. 철회/해지

13.1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예. 지급불이행), 당사는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을 철회 혹은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여타 권리는 여하한 영향 없이 존속된다.

13.2 고객이 지급을 중단하거나 파산 혹은 채무면제 목적의 유사한 절차를 신청한 경우 당사는 계약을 즉시(유예기간 없이) 철회 혹은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13.3 다음의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을 제공함 없이 계약을 철회 혹은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 고객의 재무상황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당사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고객의 능력이 위험에 처한 경우, 또는
- 고객이 파산한 경우.

13.4 계약서 서명 후 법적 및/또는 규제 변경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계약을 철회 혹은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13.5 당사의 계약 철회 또는 해지 통지서를 수신하면 고객은 당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접근권한을 당사에 즉시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당사 혹은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전통지가 있을 경우 당사는 당사의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13.6 본 제 13 조에 언급된 권리들은 일체의 법령 상 권리에 덧붙여 적용되며,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4. 수출 통제 및 세관

- 14.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적용되는 외국 무역법(국내 및 국제 (재)수출 통제 및 관세 규정(금수조치 및 기타 제재 포함)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이하 "외국 무역법")에 따라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금지되거나 저해되는 경우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일부 이행이 제외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본 해지는 전체 계약을 종료한다.
- 14.2 대외무역법에 따른 인·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 시기는 그에 따라 연장 또는 변경되며, 어느 당사자도 해당 지연과 관련하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인허가 신청 후 12 개월 이내에 인허가가 거부되거나 허여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해당 인허가가 요구되는 의무의 이행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일부 이행이 제외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본 해지로 전체 계약이 종료된다.
- 14.3 각 당사자는 제 14.1 조에 따른 이행을 금지 또는 방해하거나 제 14.2 조에 따른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외무역법을 알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4.4 당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은 대외무역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대외무역법과 관련하여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 및 문서는 최종 고객/사용자, 목적지 및 인도물 및 서비스의 의도된 최종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고객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당사에게 해당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단독 재량으로 본 계약에 따른 당사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4.5 고객이 제 3자(구체적으로 고객의 계열사 포함)에게 인도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관련 대외무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는 고객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4.6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제 14.1 조, 제 14.2 조, 제 14.4 조 및 제 14.5 조에 따른 당사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14.7.1 관세 국경을 넘어서 당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운송물품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수입 통관을 위해 상업 송장 및 인도증서 등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당사에 납품하는 경우, 고객은 추정 송장에 "관세 목적만을 위한" 노트와 함께 공정한 시장 가격을 반영한 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 가치는 하드웨어와 각 소프트웨어와 같은 재화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14.7.2 인도 또는 견적 서류에서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타 데이터(예: 지도 데이터)의 국경간 공급 또는 제공은 전자적 수단(예: 이메일 또는 다운로드)으로만 이루어진다. 본 조항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플래시가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15. 비밀유지

- 15.7 당사의 모든 비즈니스 및 기술 정보(제품의 구매가격, 납품 가능한 모든 품목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될 수 있는 특성 및 기타 지식 또는 경험 포함)는 이미 공개된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제 3자에 대해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 내부적으로도 사내에서 해당 사항에 반드시 관여할 필요가 있으며 기밀유지준수 의무를 갖는 이들에 국한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대상 비즈니스 및 기술정보는 여전히 당사의 독점적 재산으로 존속한다. 당사의 사전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보는 복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당사의 요청 시, 당사를 출처로 한 모든 정보(일체의 사본 및 녹음본 포함) 및 대출 자산은 즉시 완전히 당사에 반환되거나 파기되어야 한다.

15.8당사는 제 14.1 조(특허, 실용신안, 반도체 보호 등 산업재산권 신청권 및 저작권을 포함)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16. 기타 조항

16.7본 일반조건 규정 중 또는 본 일반조건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 규정 중 하나가 무효이거나 무효화되는 경우, 이는 나머지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들은 무효한 규정을 그 규정이 추구하는 경제적 성공에 가장 근접한 유효한 규정으로 대체할 의무가 있다.

16.8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재량에 따라 주문을 실행하는 사업시설의 등록주소지 소재 법원으로 한다.

- 고객이 상인(merchant)이거나,
- 한국 내 일반 관할법원이 없거나,
- 고객이 계약체결 후 등록지나 주소지를 해외로 변경하거나, 소송 제기 당시 고객의 등록지 또는 주소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또한, 당사는 고객의 등록사무소 소재지 또는 지사운영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개시할 권리도 지닌다.

16.3 당사와 고객 간 모든 법적 관계는 국제사법 규정 및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 규율된다.

* * *